

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는 ‘농약 PLS 제도’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

1. PLS (Positive List System) =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

수입 및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하였습니다.

① PLS 도입배경

- 국내 미등록 농약(잔류농약허용기준 미설정)이 사용된 농산물 수입하는 경우 국제기준 코덱스(Codex)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, 수출국의 잔류농약허용기준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
⇒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및 농산물 유입을 사전에 차단

② PLS 개념

-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미검출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
⇒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
※ 잔류허용기준 - 유통되는 농산물에 최대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의 양을 정한 수치
-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 사용시 잔류허용기준 : 0.01ppm
⇒ ppm = 100만분의 1 ※ 0.01ppm(불검출 수준의 양) = 물 100톤 중 농약 1g

《2019년 1월 1일부터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사용할 경우》

➡ 농약 잔류허용기준(0.01ppm)을 초과하여 농산물 출하연기 및 폐기, 과태료 부과

③ PLS 시행 관련 달라지는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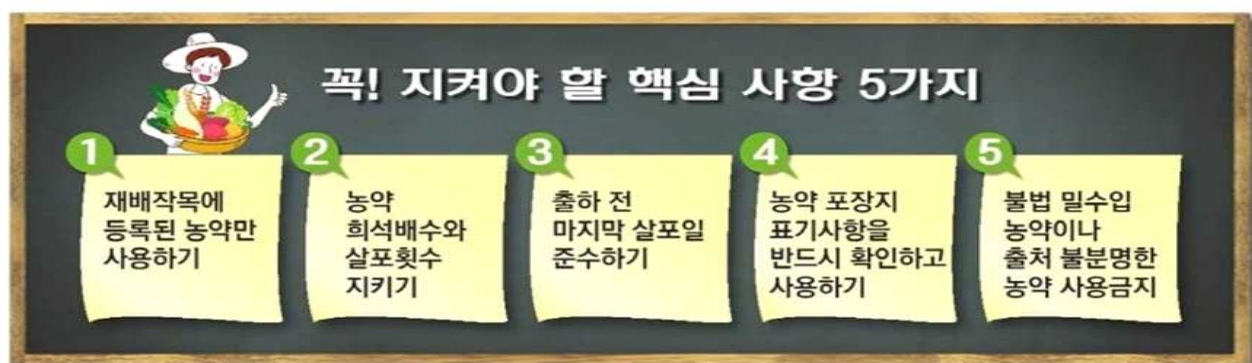
주요내용		중 전	변 경
잔류 농약 검사 기준	잔류허용기준 설정된 농약	•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 적합	• 변동 없음
	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	1순위) Codex 기준이하 적합	• 0.01ppm(일률기준) 이하 적합 (0.01ppm를 초과하여 부적합시 출하연기, 폐기, 과태료 등)
	(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시)	2순위) 유사작물 기준이하 적합 3순위) 0.05ppm 이하 적합	

2. 이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꼭 지켜야합니다.

- 수확한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의 양이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농약 최종살포 시기와 최대살포 가능횟수를 말함(농약관리법 제23조)

《 농약의 안전사용기준(예시) 》

농약(품목명)	적용작물	적용병해충	사용량	안전사용기준	
				사용시기	사용횟수
터부포스 입제	갯	배추벼룩잎벌레	10a당 5kg	파종전 까지	1회 이내
디메토모르프 수화제	시금치	노균병	물20ℓ 당 20g	수확 14일전 까지	1회 이내
인독사카브 입상수화제	파(쪽파포함)	파굴파리	물20ℓ 당 3.4g	수확 14일전 까지	2회 이내



※ 갯에는 갯에만 등록된 농약만 사용 / 고추에는 고추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

3. PLS 제도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

① 한시적 농약 안전사용기준 설정

- 직권등록 확대(최소 1,670종)에도 불구하고, 등록농약이 부족한 작물은 제도개선을 통해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한 농약을 확대
 - 농업현장에 꼭 필요한 농약에 대한 한시적('21년 까지) 사용기준을 제시

② 비의도적 농약 오염 /비산대책

- DDT, BHC, 엔도설판, 퀸토젠 등 토양내 장기잔류로 비의도적 오염을 유발하는 사용금지 농약은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계획
 - 토양잔류 및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
 - 항공방제, 연작 등으로 인한 잔류농약 오염방지 기술 매뉴얼 제작

③ 장기 재배·저장 농산물 경과조치

- 2019. 1월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PLS 제도 적용